

2025 경북글로벌게임센터

경북 게임 창업

제작지원 사업 재공고

공고기간

2025. 4. 18.(금)~2025. 5. 2.(금)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25. 11. 15.

지원대상

총 2개사 내외

지원금

최대 지원금 기업당 4천만원(8천만원)

자격요건

(창업)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 1년 이내 창업한 도내 기업 또는 역외기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목 차

Part 1. 사업안내 03

Part 2. 사업비 산정기준 14

Part 3. 신청서 작성방법 21

#1

경북 게임 창업 제작지원 사업안내

[문의처]

사업관련 : ICT융합산업팀 안진주 책임연구원, 053-819-8174, anjinju2000@gbtp.or.kr

e나라도움관련 : 1670-9595

경북 게임 창업 제작지원 사업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게임기업의 콘텐츠 발굴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경북 게임 창업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게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5년 4월 18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 경북 게임 창업 제작지원 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년 11월 15일까지
- 지원금 : 기업당 4천만원(8천만원)
- 지원대상 : 2개사 내외
- 추진방향
 - 우수한 역량을 갖춘 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선정(공고 시점에 기획을 완성하여 제작단계로 진입이 가능한 게임 중심 지원)
 - 우수과제 우대방안 추진(향후 우수과제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경북글로벌 게임센터 타 지원사업 지원시 우대 및 성과공유회 TP 원장상 수여)

II 모집 및 선정개요

- 모집 및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발표평가를 통한 선정
 - 공고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접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접수
 - 선정 : 발표 평가를 통한 선정

모집규모			
	<p>1. 창업 제작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업 수 : 총 2개사 내외 ○ 지원금 : 1개사, 지원금 최대 4천만원 - 총사업비 : 경북TP 지원금 + 자부담금(=기업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지원금(90% 이내) + 자부담금(10% 이상) • 총사업비 계산방법 : 경북TP 지원금 ÷ 0.9 = 총사업비(백만원 단위 절상) - 경북TP 지원금 : 총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이상(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금 비율 : 자부담금/총사업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계산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북테크노파크지원금 : 4천만원 2. 총사업비 : 4천만원 ÷ 0.9 = 4천5백만원 3. 자부담금 : 4천5백만원 - 4천만원 = 5백만원 4.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p>※ 별첨2.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계산 서식 참조</p> </td> </tr> </tbody> </table>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계산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북테크노파크지원금 : 4천만원 2. 총사업비 : 4천만원 ÷ 0.9 = 4천5백만원 3. 자부담금 : 4천5백만원 - 4천만원 = 5백만원 4.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p>※ 별첨2.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계산 서식 참조</p>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계산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북테크노파크지원금 : 4천만원 2. 총사업비 : 4천만원 ÷ 0.9 = 4천5백만원 3. 자부담금 : 4천5백만원 - 4천만원 = 5백만원 4.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p>※ 별첨2.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계산 서식 참조</p>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간 내 글로벌 진출형으로 완성 및 시장 진출이 가능한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R, AR, MR, 콘솔, PC, 모바일 플랫폼 등 게임 콘텐츠 ○ IP(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에 사전 사용 승인의 책임은 신청(선정)기업에 있으며, 사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음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도 신청(선정)기업에 있음 ○ 필요시 IP보유기관의 콘텐츠 사용 승인 공문 또는 범용 사용이 가능한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다 지원 자격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시 주관·참여기업 모두 경상북도 내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전 예정 기업일 경우 이전확약서 필수 제출. 주관기업 참여율이 50%이상 이어야 함. ○ 자격요건(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예비창업자</td> </tr> <tr> <td>공고일 이전(2025.4.18.) 창업(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경북 도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한 경북 도내 기업 또는 역외기업 - 1년 이내 창업한 역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사업장(본사)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 지사의 경우 설립 후 경상북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	공고일 이전(2025.4.18.) 창업(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경북 도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이전(2025.4.18.) 창업(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경북 도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사업자등록일 기준, 상주인력 거주증빙필수)

※ 1년 이내 창업기업

2024.4.18 이후, 공고일 이전(2025.4.18.)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게임기업 최초 등록된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기준)

지원조건

○ 결과물 : 협약기간(2025년 11월 15일)까지 개발 및 상용화 완료하여야 함

구분	결과물
모바일	정식 런칭 빌드 개발 완료 및 앱마켓 출시
PC, 콘솔, 아케이드 게임	게임 런칭 빌드 개발 완료
AR, VR, XR 등	게임 런칭 빌드 개발 완료 및 어트랙션 연동 ※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한 상용화된 어트랙션 및 기기 연동 권고

- 결과평가 시 구동 시연 필수(결과물은 협약기간 내 증빙 필수), 앱다운로드 url 명시

- 컨소시엄 신청 시 '공동수행약서'에 지식재산권 등 결과물의 권리·소유권 관계에 대한 협약 내용을 제출하며, 결과평가 시 컨소시엄 기업 간 권리 관계에 대한 협약(또는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여 함께 제출

- 결과평가에서 해당 빌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규고용

- (필수사항) 신규 의무고용 창업 1인

· 3개월 이상 근무 시 인정(계약직 가능, 인턴(일용직)은 불가)

· 신규고용인력의 증빙서류 중간점검시 제출(4대보험, 원천징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 신규인력 참여율 타사업 포함 100% 시 인정(ex. 해당사업(A) 80% + 타사업(B) 20%=100%)
단. 해당사업(A) 50% 이상 반영 필수

· 과제 선정 이후 이행여부 수시 점검을 통해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시 반영 예정

· 미이행 시 예산 반납

○ 기타

- 지원금 소급적용 불가하며 자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함

- 1개사 1개 과제 지원가능(참여기업을 포함하여 복수지원 불가), 단

- 제작지원사업 메뉴얼 교육 및 이나라교육(사업담당자, 이체담당자 포함) 1회 이상 참석

※ 단체 교육 불참시 이나라도움-정기교육신청 '보조사업자 집행과정(3시간)' 교육 후 수료증 제출

- 기타 시장진출 및 품질향상을 위한 경북글로벌게임센터 지원사업 적극 참여

지원금의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선정평가 및 사업비조정위원회(발표평가) → 협약 체결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업비 계좌 및 (필요시)e나라도움 전용 카드 개설 → 자부담금 입금 → 1차 지원금 지급(지원금의 70%) → 중간점검 → (필요시)자부담금 입금 → 2차 지원금 지급(지원금의 30%)

○ 지원금 지급 방법

- 해당 과제 지원금 전용 신규계좌 개설 필수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되어야함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신규계좌 개설
 - (필요시) 카드는 e나라도움 전용카드 발행
- 선정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현금 자부담 10%이상 필수
 - 협약체결 후, 자부담금은 해당 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경북TP 지원금 비율에 따라 분할 입금 가능, 1차 70%, 2차 30%)
- 협약체결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필요조건 충족 후 지원금 지급
 - 기한 내 이행(지급)보증보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협약종료일~ 1년까지)
총사업비기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총사업비	협약체결일 ~ 26.3.31.

-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구분	지원금 지급	지급조건										
1차 지원금	총 지원금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총자부담금의 70% 이상 협약통장 이체 										
2차 지원금	총 지원금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부담금 중 잔여금액 협약통장 이체 • 중간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점수</th> <th>등급</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90점 이상</td> <td>최우수</td> <td rowspan="3">2차 지원금 지급</td> </tr> <tr> <td>90점미만~80점 이상</td> <td>보통</td> </tr> <tr> <td>80점미만~70점 이상</td> <td>성실수행</td> </tr> </tbody> </table>	평가점수	등급	지원내용	90점 이상	최우수	2차 지원금 지급	90점미만~80점 이상	보통	80점미만~70점 이상	성실수행
		평가점수	등급	지원내용								
		90점 이상	최우수	2차 지원금 지급								
90점미만~80점 이상	보통											
80점미만~70점 이상	성실수행											
70점미만	불성실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점검 후 1개월 이내 재점검 • 재점검결과 성실수행 이상 시 2차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사업·관리

○ 기본 준수사항

- 총 사업비는 경북TP 지원금과 자부담금 합계 금액임. 해당 사업비 모두 사업비 사용·관리 기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되며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됨. 부정수급징후 및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지원금 대비 자부담금 비율 이하로 자부담금을 집행하거나 미집행 시 e나라도움 상 국고지원금 집행이 불가, 자부담금 미집행 비율만큼 국고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비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며 과제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
- 지원금의 집행 내역을 별도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재단으로부터 상시 집행점검을 받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내역을 보완하여야함(사업관리지침에 따라 불인정 금액 분류 시 환수조치)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제 수행 기업별 정산보고서 제출 후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정된 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검사 결과에 따른 불인정금

액(부정수급 및 부당 집행) 및 집행 잔액, 이자를 반납하여야함

- 재단 요구에 따른 관련 자료 미제출, 사업비의 부당 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 발생 시 본 재단은 해당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재단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비 사용 및 관리

- 14페이지, 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참조

참가기준

○ 참여조건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 지원사업 및 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 및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
-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함)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가 포함될 경우
 -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기업, 참여기업)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지원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기업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및 서약서에 의하며,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사행성, 선정성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게임 콘텐츠
- 단순한 OEM 또는 업그레이드인 게임 콘텐츠
- 상기 외 기타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기술료 징수

- 콘진원 기술료 징수대상에서 제외

준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공고, 안내자료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및 수행기업의 책임임
- 수행기업에 제재 사유(결과물 및 대응자료 미제출, 제작지원금 부당사용, 참여인력 인건비 중복 사용, 기타 해약 사유 등)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참가 시 주관·참여기업 중 1개 업체라도 제재 사유 발생 시 컨소시엄 참여기업 전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과제 결과물의 경우 사업의 홍보와 성과 확대를 위해 언론홍보와 공식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과제종료 이후 3년 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 조사 협조 필수
- 위탁용역 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제공한 표준용역계약서와 용역기준을 따라 계약 필수

관련 규정 및 기타사항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지침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2024.03.20.)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2024.12.24.)
 - e-나라도움 운영메뉴얼
 - (재)경북테크노파크 관련 지침
- 개발 결과물의 귀속
 - 과제 수행 성과로 취득되는 개발 게임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 및 권리·소유권은 주관·참여기업(컨소시엄의 경우 협의(협약, 계약)된 권리관계에 따름)에 있음. 단, 사업 목적과 공적 가치 달성, 성과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 협약 시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포함하여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 단,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제외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구분	일정(예정)	비고
사업 공고	2025.4.18.(금)~ 2025.5.2.(금)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btp.or.kr)
접수	* e나라도움 접수 ~2025.5.2.(금) 14:00	* 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능
평가 및 선정(서류, 발표평가)	선정평가 2025.5.8. (목)	
선정결과 통보	2025.5.13.(화)	개별 통지
협약체결	2025.5월 중	장소 : 경북글로벌게임센터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1차 보조금 교부	협약체결 후 4주 이내	교부 결정금액의 70% * 게임 사업 사업비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 지연될 수 있음
현장실태점검	2025.7~8월 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중간평가	2025.7~8월 중	현장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간평가 실시
2차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완료 후 4주 이내	교부 결정금액의 잔금 30%
결과평가	2025.11월 말	결과평가 및 결과물 시연 (적정여부 판단 → 환수여부 검토)
성과 및 만족도 조사	상시	성과 등 실적자료 제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평가

- 필요시 발표평가 전 현장점검 진행 또는 인터뷰 진행
- 발표평가 항목 (발표 및 시연영상 10분, 질의응답 15분으로 구성 예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행기업의 적정성 (20점)	◦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10점
	◦ 자료 제출의 성실성	10점
기획력 (20점)	◦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동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창의적 기획	10점
	◦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방안의 우수성	10점
개발력 및 수행능력 (30점)	◦ 안정적 개발을 위한 기술보유현황, 개발/제작능력, 참여인력 숙련도 등의 경쟁력 검증	10점
	◦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위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수행계획과 관리의 적합성 검증	10점
	◦ 사업기간 내 개발/제작 완료 가능 여부(출시가능성 포함)	10점
상용화 가능성 (30점)	◦ 성공적인 출시(서비스)를 위한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해외 퍼블리싱 계약, 자체서비스 계획 등	10점
	◦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국내·외 네트워크, 마케팅 등) 여부	10점
	◦ 예상 매출 산출 근거의 적합성 및 현실성 검증	10점
우대사항 (+5점)	◦ 지식재산권 취득 가능여부(1건당 1점 부여) ◦ 캐릭터IP, 특허출원 등	5점
합 계		100점+5

※ 평가항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지침'

위반행위 유형	처리기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경북 게임 창업 제작지원 사업 사업비 산정 기준

[문의처]

사업관련 : ICT융합산업팀 안진주 책임연구원, 053-819-8174, anjinju2000@gbtp.or.kr

e나라도움관련 : 1670-9595

★ (공통) 업체가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제외하여 작성
전담기관(경북TP)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목	세목	세세목	용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비고
인건비	보수		<p><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 연봉 월액 <p><산정 및 정산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관 및 참여기업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기업부담 4대 보험료 제외) 2. 소속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금액(세전)을 당해 과제 참여율(최대 100%) 및 기간에 따라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의 참여율 타사업 포함 100% 초과 불가 • 기존인력의 경우 최근 3개월 원천징수 영수부 기준 고정 급여 이상 책정·집행 불가(단, 임금 상승 시 작년 대비 20%미만으로 증액 가능) ※ 원거리 인력 인건비 책정 지양, 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거리 인력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명백한 사유 및 증빙 제출 필요 (일일 업무관리일지, 주간업무일지, 출근부, 연구소·지사로 순환 근무 시 왕복 교통비 영수증, 결재서류 등) ※ 현장점검 시 재택근무, 원거리 근무자 확인 가능해야함 ※ 참여인력의 60%이상은 경북/대구 인력으로 배치 필수 • 신규인력의 경우 기업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 직급 및 유사 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책정 ※ 협약기간 이후 채용 및 3개월 이상 신규인력만 인정 3. 사업비 집행 불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적·비정기적 임금 •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 기업부담 4대보험료 • 시간외 수당, 성과금 등 수당성 급여 4. 대표이사는 월급여 단가 최대 4백만원, 참여율 50% 까지 기업부담금으로만 책정 가능(실 집행액 월 최대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사업자에 한함. 개인사업자 대표 인건비 책정불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대표이사 산출예시] 월급여 600만원인 대표이사가 6개월간 100% 개발에 참여할 경우 ☞ 월급여 400만원 × 참여율 50% × 참여기간 6개월 = 1,200만원</p> </div> <p>※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정산시 인건비 산정근거 제출 필수 : 원천징수영수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필요시)보수규칙 등</p>	계좌이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체확인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대장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https://si4n.nhis.or.kr) ※ 인력변경 시마다 발행 (또는 고용 신채 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http://total.kcomwel.or.kr) -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2. 신규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계획 (공고문 등) - 이력서 - 이체확인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대장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인력변경 시마다 발행 (또는 고용 신채 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증빙) 	총인건비 80% 이내 인정

인 건 비	상 용 임 금	<p><용 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p><산정 및 정산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관 및 참여기업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기업부담 4대 보험료 제외) 2. 소속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여액(세전)을 당해 과제 참여율(최대 100%) 및 기간에 따라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의 참여율 타사업 포함 100% 초과 불가 • 기존인력의 경우 최근 3개월 원천징수 영수부 기준 고정 급여 이상 책정·집행 불가(단, 임금 상승 시 작년 대비 20% 미만으로 증액 가능) <p>※ 원거리 인력 인건비 책정 지양, 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거리 인력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명백한 사유 및 증빙 제출 필요 (일일 업무관리일지, 주간업무일지, 출근부, 연구소·지사로 순환 근무 시 왕복 교통비 영수증, 결재서류 등)</p> <p>※ 현장점검 시 재택근무, 원거리 근무자 확인 가능해야함</p> <p>※ 참여인력의 60%이상은 경북/대구 인력으로 배치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인력의 경우 기업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 직급 및 유사 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책정 ※ 협약기간 이후 채용 및 3개월 이상 신규인력만 인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사업비 집행 불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적·비정기적 임금 •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 기업부담 4대보험료 • 시간외 수당, 성과금 등 수당성 급여 	계 좌 이 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체확인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대장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https://si4n.nhis.or.kr) ※ 인력변경 시마다 발행 (또는 고용 신채 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http://total.kcomwel.or.kr) -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신규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계획 (공고문 등) - 이력서 - 이체확인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대장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인력변경 시마다 발행 (또는 고용 신채 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증빙) 	
-------------	------------------	--	------------------	--	--

일 반 수 용 비	수수료 및 사용료	<p><용 도></p> <p>1.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인증(전기, 전파, 아케이드 등) 수수료 ※ 본 사업에 해당하는 신규 H/W 인증에만 적용 ※ 기존 주관/참여기업에서 보유한 H/W의 변경 개발에는 적용 불가 <p>2.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수수료 : 자부담 편성</p> <p>3. 회계검사 및 정산 수수료 : 자부담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회계정산 수수료 기준(VAT 제외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총 사업비</td> <td>정산 수수료</td> </tr> <tr> <td>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td> <td>700,000원</td> </tr> </table> <p>4. AI 관련</p> <p><산정 및 정산기준></p> <p>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p> <p>2. 사업비 미편성 시 기업 자체부담 필수</p>	총 사업비	정산 수수료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700,000원	카드/ 계좌 이체	<p>1. 카드결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거래명세표 (거래내역이 나오는 영수증) - 견적서 - 비교견적서 2부 - (해당시)계약서 - 결과물 <p>2. 계좌이체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체확인증 - 세금계산서 - 견적서 -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2부 - (해당시)계약서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결과물 (보고서, 인증서 증권 또는 사진대지 등) 	총사업비 20% 이내 인정
	총 사업비	정산 수수료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700,000원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p><용 도></p> <p>1.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p>								
우 요 리 비	임 차 료	<p><용 도></p> <p>1. 장비 및 S/W라이선스 임차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관련 이용료 <p><산정 및 정산기준></p> <p>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p> <p>2. 국내결제 및 사업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p>		총사업비 10% 이내 인정					
	일 반 용 역 비	<p><용 도></p> <p>1. 사업수행의 일부를 외부기업에게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p> <p>2.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p> <p>3. 결과물과 연동된 어트랙션 및 기기 제작 위탁 용역비 등</p> <p><산정 및 정산기준></p> <p>1. 수행계획서 상 계획된 위탁사업 비용만 인정</p> <p>2. VAT포함 2천만원 이상 시 나라장터 공고 필수</p> <p>3. 전담기관(경북TP) 배포 표준용역계약서로 통일 (자체계약서 사용 불가)</p> <p>4. 선금 최대 50%까지 이체, 잔금 결과보고서 수취 후 이체</p> <p>5. 위탁사 최소조건</p> <p>① 수행분야 1년 이상의 경력 ② 1인 이상 참여인력 필요</p> <p>③ 국세/지방세 완납 기업 ④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등</p> <p>6. 직접 개발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위탁비로 집행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사업목표, 내용 등의 경중에 따라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음</p>	계좌이체	<p>1. 계좌이체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체확인증 - 세금계산서 - 견적서 - 비교견적서 2부 - 계약서 - 수행계획서 - 거래명세서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결과물 (보고서 또는 사진대지 등) 	총사업비 40% 이내 인정 (자부담 우선 편성)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p><용도> 1. 신규 채용 참여인력 채용에 따른 PC/노트북 구입비 - 1인당 최대 2백만 원 이내(부가세 제외) - 채용 전후 1개월 이내 인정 ※ 신규 채용 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인정되는 총 채용인력의 자산 구입비만 인정 (ex. 6월~7월 1개월 신규채용 1명, 7월~9월 3개월 신규채용 1명의 경우, 인정되는 인력은 1명이며 PC/노트북도 1대만 구입 가능) - 자산취득에 포함되는 제세, 수수료 등 기타 부대경비 포함</p> <p><산정 및 정산기준> 1. 지원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경비 2. 지원과제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3. 전담기관(경북TP)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p>	카드/계좌이체	1. 카드결제시 - 카드거래명세표 (거래내역이 나오는 영수증) - 견적서 - 비교견적서 2부 - (해당시)계약서 - 사진대지 2. 계좌이체시 - 이체확인증 - 세금계산서 - 견적서 -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2부 - (해당시)계약서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사진대지	총입비 5% 이내 인정 (자부담 편성)
		<p><용도> 1. 결과물과 연동된 어트랙션 및 기기 구입비 - 결과물 시연 가능한 전기기 기준 1대만 인정 ※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한 상용화된 어트랙션 및 기기 - 자산취득에 포함되는 제세, 수수료 등 기타 부대경비 포함</p> <p><산정 및 정산기준> 1. 지원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경비 2. 지원과제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p>			
여비	국내여비	<p><용도> 1. 본 사업과 관련된 관외 출장 경비 • 관외 : 사업장 본사 소재지(시기준) 이외 지역 (ex. 경산시 소재 : 경산시 제외 도내 및 타지역) • 교통비, 숙박비만 인정</p> <p><산정 및 정산기준> 1. 지원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경비 2. 지원과제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3. 기간, 목적, 장소, 여비산출내역, 출장자, 세부일정이 명시된 계획서, 복명서, (필요시) 결과보고서 필수 4. 전담기관(경북TP) 여비 기준 준수 - 19페이지 전담기관 여비기준 참조</p>	카드/계좌이체	1. 사업카드사용시 - 영수증기차표, 숙박 등 - 출장계획서 - 출장복명서 (필요시)결과보고서 - 출장사진 2장 이상 2. 출장자 개인카드사용시 - 출장자에게로 입금된 이체확인증 - 출장계획서 - 출장복명서 (필요시)결과보고서 - 출장사진 2장 이상 ※ 숙박비의 경우 숙박일시가 나오는 인보이스 필수 ※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 추가	총입비 3% 이내 인정 (자부담 편성)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 | | |
|---------------------|----------------|-----------------|
| 1. 주류판매(유통) | 2. 상품권판매 | 3. 복권판매 |
| 4. 레저 스포츠 | 5. 운동경기, 레저용품 | 6. 극장식당 |
| 7. 산후조리원 | 8. 총포류 판매 | 9. 남·여 기성복 |
| 10. 양품점 | 11. 골동품, 예술품 | 12. 학습지 |
| 13. 회원제 | 14. 방문판매 | 15. 다단계판매 |
| 16. 화랑, 표구사 |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
| 22. 볼링장 | 23. 스키장 | 24. 수영장 |
|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 26. 악세사리 |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
| 28. 수제용품점 | 29. 예식장 | 30. 결혼(가례)서비스 |
| 31. 혼수전문점 | 32. 장의사 | 33. 이벤트 |
| 34. 상담실(결혼 등) | 35. 장례식장 | 36. 묘지(납골공원 등) |
| 37. 레포츠(스포츠)클럽 | 38. 온천장 | 39. 화방 |
| 40. 공연장, 극장 | 41. 운동경기관람 | 42. 유선TV |
| 43. 주차장 | 44. 피아노 대리점 | 45. PC 게임방 |
| 46. 종교상품점 | 47. 피부미용실 | 48. 자석요 |
| 49. 악기 | 50. 스포츠마사지 | 51. 체형관리 |
| 52. 대중목욕탕 | 53. 학교등록금 | 54. 유치원 |
| 55. 종교단체 | 56. 무속, 철학관 | 57. 메리야쓰 |
| 58. 아동복 | | |

[별첨] 전담기관 여비기준

국내여비 지급 기준

구분	운임			자동차 버스	숙박비 (1박당)	개인차량 이용시 연료비
	철도	선박	항공			
원단위 절사	실비 (보통실)	실비 (2등급)	실비 (Economy급)	실비	실비 (100,000원 한도)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9) + 통행료

※ 숙박비는 서울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은 7만원 한도에서 지급 가능

※ 개인차량 이용 시 운임(연료비 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 : 출발지 ~ 목적지(<http://map.naver.com> 자동차길찾기/추천경로)

- 유가 : 매월 1일 경상북도 소재 주유소 휘발류 평균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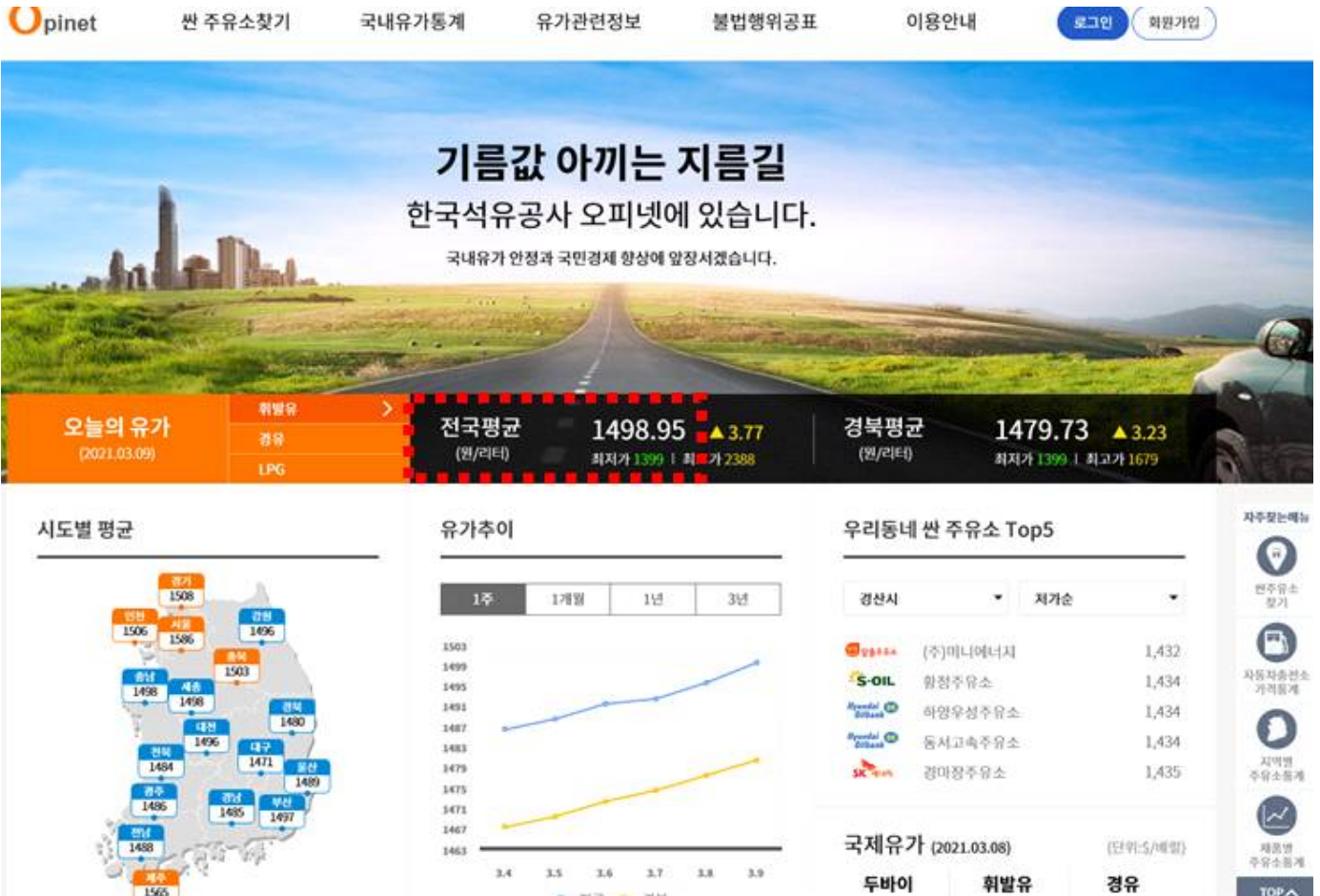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자료 적용)

- 연비 : 휘발유 차량(9km/ℓ)

- 유료도로 통행료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실비 정산 지급

- 예시 : 2025.2월 기준 유가 : 1,597원

※ 기준 변동 시 재공지 예정



경북 게임 창업 제작지원 사업 접수 및 제출방법

[문의처]

사업관련 : ICT융합산업팀 안진주 책임연구원, 053-819-8174, anjinju2000@gbtp.or.kr

e나라도움관련 : 1670-9595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기간 : 2025.4.22.(화)~2025.5.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미접수 불인정. - 사업 마감 전날 업로드 권고, 마감 임박 시 오류 등으로 업로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나라도움 접수시 예비창업자는 신청인 대표자 이름으로 접수 ○ 접수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온라인접수만 가능 		
온라인접수 ~5.2(금) 14:00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수 <p>※ <u>현장방문접수는 받지 않음</u></p>		
접수 상세안내		
① 온라인 접수		
별첨3. e나라도움 매뉴얼(사업신청 접수방법) 참고		
과제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재단법인경북테크노파크 지정 ○ 공모기관에 재단법인경북테크노파크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5 경북 게임 런칭·창업 제작지원 사업” 선택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경북 게임 런칭·창업 제작지원 사업” 선택 후, 오른쪽 위 [신청서작성]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한 내에만 가능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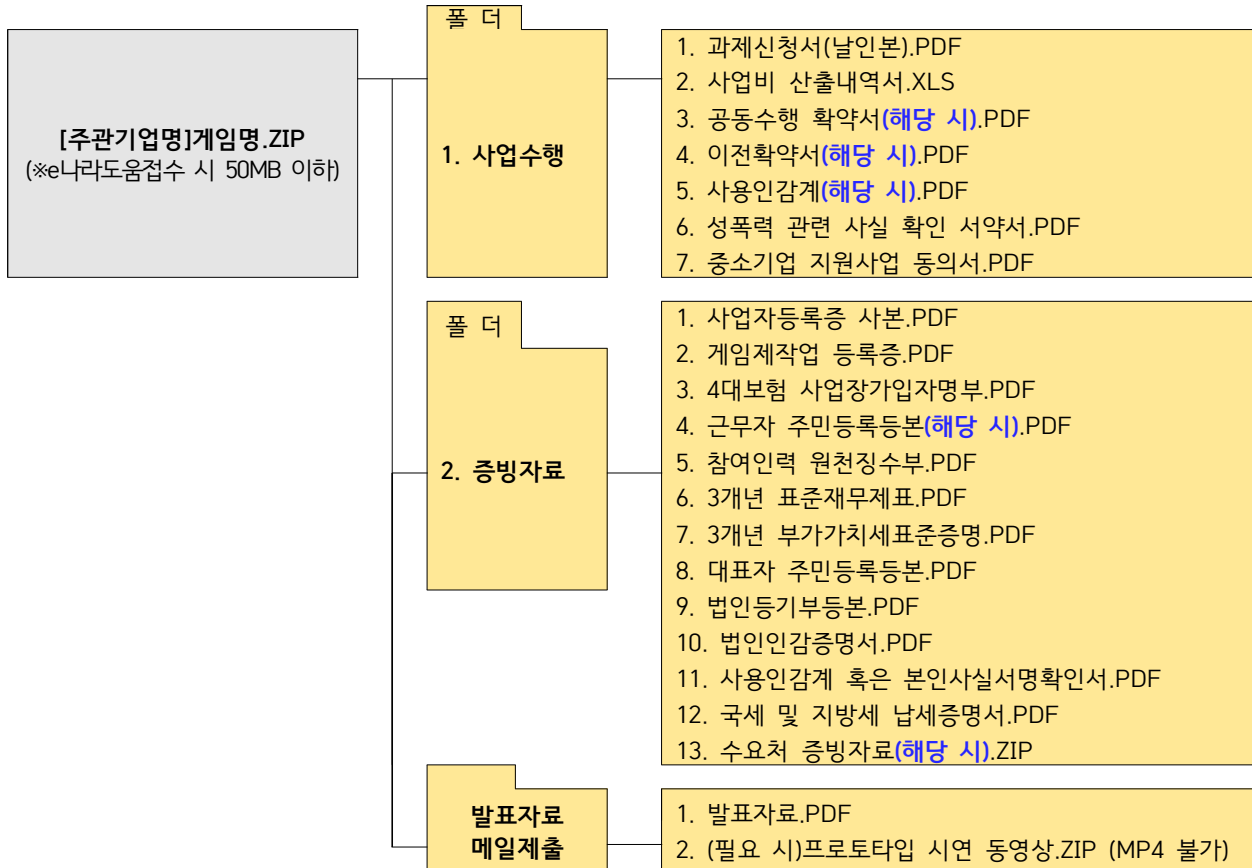
★ 사업수행, 증빙자료 : e나라도움 제출 (5/2(금) 14:00까지)

구분	No	제출서류	작성/발급방법	유의사항	파일형식
사업수행	1	<서식1> 과제신청서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스캔파일 (pdf)
	2	<별첨1> 사업비 산출내역서	◦ 별첨1. 사업비 산출내역서.xls 파일 내 매뉴얼 참고		엑셀.xls
	3	<서식2> (*해당 시) 공동수행 협약서	◦ 컨소시엄 구성 해당 시 제출		
	4	<서식3> (*해당 시) 이전 협약서	◦ 협약 후 3개월 내 본사이전 가능한 역외기업		
	5	<서식4> (*해당 시)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사용하는 경우		
	6	<서식5>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 서약서			
	7	<서식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증빙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	◦ 공고일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 3개월 이후일 시 3개월 이내의 '사업자사실증명원' 제출	누락 시 평가점수 감점 (※지식 재산권은 게임관련 및 캐릭터 IP에 한하며 증빙서류 사본 제출시에만 점수로 반영가능함)	스캔파일 (pdf)
	2	게임제작업등록증 (*해당 시)			
	3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해당 시)	◦ 참여인력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자격취득일이 확인 가능해야 함		
	4	근무자 주민등록등본 (*해당 시)	◦ 지사의 경우, 근무자 거주 증빙 제출		
	5	참여인력 원천징수영수부 (*해당 시)	◦ 참여인력 전체('22.01.~현재)		
	6	3개년('22~'24년) 표준재무제표 (*해당 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22~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22~24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7	3개년('22~'24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해당 시)			
	8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9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공고일 3개월 이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공고일 이후 인터넷등기소 발급분		
	10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시)	◦ 공고일 이후 인터넷등기소 발급분		
	11	사용인감계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직인 날인 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첨부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동일 시 사용인감계 제출안함 - 서명 날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1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은 것		
	13	수요처 증빙자료 (*해당 시)	◦ 지재권(특허, 프로그램 등), 퍼블리싱 계약서,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 ◦ 미제출 시 평가에 미반영		
발표자료	1, 2	발표자료 및 동영상 (필요 시)시연	◦ 발표자료.PDF, 동영상파일.ZIP(.MP4 불가) - 발표자료는 담당자 메일로 별도 제출		PDF ZIP

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사업수행, 증빙자료)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
 - ※사업수행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증빙자료 제출서류 누락 시 선정평가 개최 전까지 보완 제출이 가능하지만 평가 시 자료성실도 항목에서 감점될 수 있음
 - 폴더 내 파일 순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파일 앞 번호는 오름차순으로 작성
 - 제출일 : ~5.2.(금) 14:00까지
- 제출 압축파일명 : [주관기업명]게임명.ZIP
- 제출서류 폴더트리



※ 발표자료도 접수마감기한까지 이나라도움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수정불가함

- 동영상 용량으로 인해 이나라도움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담당자 메일로 제출가능
(anjinju2000@gbtp.or.kr), 메일로 제출시 반드시 전화 할 것

모집 및 선정 방법

- 공개모집 후 발표평가를 통한 선정
 - 공고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선정 : 발표 평가를 통한 선정 (필요시 평가 전 현장점검 진행)

선정방법 및 기준

-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 게임 콘텐츠 산업 분야, AI 전문가, 지원사업 관리 및 예산(회계) 전문가 등
- 해당 신청분야의 과제 수행능력 등을 발표와 제출서류를 계량평가하여 선정
- 심사위원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점 7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점수 순으로 선정되며, 심사 검토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